

수원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4가합8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5나3046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4가합850 판결

전문

원고의료법인 A병원

피고B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 선고 2015.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9. 6. 29.자 또는 2012. 9. 27.자 무상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81. 7.

13. 경기도고시 C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D에 원고 병원을 설립하였다.

나. E은 피고의 차남으로 1999년경부터 원고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재직 중이며, F은 피고의 장남으로 G정신병원과 H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다. 원고는 2009. 6. 29. 피고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I 임야 26,245㎡와 J 임야 5,345㎡에 관하여 같은 일자 피고의 출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1년경 무상사용을 승낙하였고, 2009. 6. 29. 및 2012. 9. 27. 무상출연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미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무상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은 원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차남인 E이 위조하였거나 피고의 의사무능력 상태(치매)를 이용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무상사용을 승낙하거나 무상출연을 한 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나. 2009. 6. 29.자 무상출연에 관한 판단

갑 제2, 14, 15, 19, 20호증, 을 제7, 13, 25, 26, 3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기흥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증인 K,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12에 나타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인지와 비록 위 문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가 일시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확정적인 의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고, 피고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위 각 문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상당한 사정이 있어,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근거로 피고가 2009.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출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009. 6. 29.자 각 출연사유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5)와 원고가 제출한 2009. 6. 29.자 출연재산계약서 원본은 모두 부동산자로 기재된 서류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의 서명 등 자필기재가 없고, 별지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출연재산계약서에는 그 면적이 실제와 달리

371m²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관되게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거나 의사무능력 상태(치매)를 이용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 작성경위에 대하여 원고의 경리과장으로 재직 중인 K은, 자신이 2009. 6. 29.자 출연사유서와 출연재산계약서 초안을 직접 작성하여 매주 2회 원고 병원과 G정신병원을 왕래하는 버스편으로 G정신병원 경리부장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였고, 이후 같은 방법으로 G정신병원 측으로부터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완성된 출연 관련 서류 및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작성(피고의 날인)을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출연일자와 같은 날인 2009. 6. 29.에 피고가 출연하였다는 안양시 만인구 I 및 J에 관하여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 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최초 위 일자 당시 세금을 포함한 비용 문제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약국개설 문제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원고는 의료법인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약국개설은 별지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한정되는 문제인 점에 비추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까지 무상출연할 의사가 확고하였다면, 위 2필지 이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시에 마치지 않을 이유가 없고, 2012년도에 출연 관련 서류를 재작성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4) 피고는 2009년부터 치매 증상이 발병하였고 2009. 6. 1.부터 2009. 6. 17.까지 서울아산병원 혈관외과에서 대동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대표자인 E은 2008. 9. 11. 피고에게 '화성농장 관련 토지 중 논 2만 평을 2008년 말까지 매각하여 대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에 근접한 2009. 6. 29. 원고에게 상당한 가치가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출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는 2007년부터 별지 제4항 기재 건물의 임대료 일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관련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원고가 납부하였다는 세금은 재산세라기보다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소득세가 대부분으로, 별지 제4항 기재 건물이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6) 각 출연사유서와 출연재산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의 10)는 그 원본이 5장 존재하는데 사용용도란이 공란이고, H병원의 직원 L은 2009. 6. 10.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사용용도란에 '이사회'라고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증명서 13장을 대리 발급받았다.

7) 별지 제4항 기재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도장은 K이 금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원고의 원무과장 M가 사용하여 왔다.

다. 2012. 9. 27.자 무상출연에 관한 판단

갑 제3, 15, 20호증, 을 제8, 14, 2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N 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증인 P, K,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13, 14에 나타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고, 피고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위 각 문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상당한 사정이 있어,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특히 피고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피고가 2012. 9. 2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출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2012년 각 출연사유서(갑 제3호증의 1, 3, 5, 6, 9)와 2012년 출연재산계약서(갑 제3호증의 2, 4, 7, 8, 10)는 그 원본이 3장씩 존재하는데, 모두 부동산자로 기재된 서류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의 서명 등 자필기재, 월일의 기재, 원고의 날인이 없으며, 2009년 출연 관련 서류와 일자를 제외한 기재 내용 및 형식이 동일하다. 특히 별지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한 출연재산계약서는 갑 제3호증의 8 기재와 달리 지목 및 면적이 '임야 2,507m²'로 기재된 또 다른 출연재산계약서 원본 3장이 존재하고, 별지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한 출연사유서는 갑 제3호증의 6 기재와 달리 용도에서 '약국시설'이 빠진 또 다른 출연사유서 원본 3장이 존재한다.

2) 그 작성경위에 대하여 E의 부인이자 피고의 며느리인 P은, 2012. 9. 27.경(추석 무렵) F으로부터 피고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빨리 출연 관련 서류를 받아놓으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의 자택으로 가서 피고(경리과장)로부터 피고의 인감을 교부받고, F으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며, 피고가 자신의 면전에서 직접 확인서면의 우무인을 날인하였는데, 위 우무인이

분명하지 않아 이후 2012. 10. 초경 F의 연락을 받고 우무인의 보완을 위해 K과 법무사를 대동하여 피고가 요양하고 있는 G병원을 찾아갔으나, 당시 피고는 우무인란에 날인하려고 하였으나 F이 거부하여 무인을 보완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원고 측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직접 위 출연 관련 서류에 날인한 것이 아니어서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될 수 없고, 원고 측에게 피고의 출연 관련 서류를 받아놓으라고 먼저 재촉을 하였다는 F이 피고의 우무인 날인을 반대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3) 원고는 피고의 우무인이 날인되었다는 확인서면(갑 제3호증의 14)을 제출하였으나, 그 원본 3장에 대한 감정결과 우무인에 날인된 지문은 용선의 특징점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감정불능 상태이고, 2011. 4. 12. 전부개정되어 2011. 10. 13.부터 시행된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식은 사라졌다.

4) 원고 주장의 출연시점인 2012. 9. 27.은 피고가 원고 내지 E을 상대로 대여금 내지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0136호, 2012가합10143호)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던 시점으로, 피고와 원고의 대표자인 E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만을 무상출연하기로 합의하였거나 피고의 의사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E은 2012. 5. 29. F에게 '화성농장 관련 토지 전부를 반환하겠다. 원고 병원의 가수금에서 자신이 사용한 35억 원 중 11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편지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5) 첨부된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의 11)는 그 원본이 10장 존재하는데, 사용용도란 공란이며, 피고 측은 위 출연 관련 서류 작성 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설민수

판사민경현

판사이규석

별지